2017년 헌법/규약 **2026**년 수정 헌법/규약 비교

2017년 헌법	2026년 헌법 수정안
전문 (The Preamble) 본회는 남침례회 (Southern Baptist Convention)와 캐나다와 남미에 속한 미주 한인 침례교회들의 자율적인 협의단체로서 신약성경의 신앙과 원리에 따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우리는 회원교회들의 상호 관계를 강화하며 협동사업을 돕기 위하여 본 헌법 및 규약을 제정,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의 친목을 도모하며,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각 회원교회의 신앙과 행정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 (The Preamble) 우리는 남침례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이하 “SBC”) 한인 교회와 캐나다 및 중남미 지역 한인 침례교회의 자율적인 협의체로서, 신약성경이 제시하는 신앙과 행습을 따르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와 선교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총회를 조직한다. 본 총회는 성경의 권위 아래 질서 있게 운영되며, 회원 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본 헌법을 제정한다.
서약 (The Covenant) 본회는 신약성경에 제시된 지역 교회 자치권,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직분,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 보장, 믿는 자의 침례, 그리고 국내외 선교를 위한 지역 교회간의 협동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기도하며, 모든 형태의 이단 교회의 침투를 막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서약한다.	서약 (The Covenant) 우리는 남침례회(SBC)가 채택한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 2000」에 동의하며, 신약성경의 원칙에 따라 각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의 자치권을 존중하며, 지역 교회 연합체인 지방회와 협력하고, 국내외 선교 사역에 적극 동참한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기도하며, 이단이 교회와 사회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힘쓴다.
제1장 명칭과 목적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CKSBCA: Council of Korean Southern Baptist Churches in America)"라 한다. 이하 "총회," 또는 "본회"라고 약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 교회의 협동과 헌신적 노력을 통해서 전도, 선교, 기독교교육, 자선 및 기타 사업을 관장함으로써 주님의 지상명령을 달성하는 데 있다. 제3조 (총회 사무실 소재지) 본회의 본부 사무실 소재지는 본회	제1장 명칭과 목적 제1조(명칭) 제1항 본 협의체의 명칭은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Council of Korean Southern Baptist Churches in America)"(이하 "총회"라 한다)이다. 제2항 본 총회의 영문 약칭은 "CKSBCA"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총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와 선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교회를 지원하고, 친교를 도모하며, 협력 사업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약으로 정한다.	
	제2장 운영 제3조(규약) 총회는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약(Bylaws)을 제정한다. 제4조(원칙) 총회는 성서적 가르침을 준수하며 헌법과 규약에 따라 질서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 2 장 회원교회 제4조 (회원교회의 자격 및 가입) ① 본회 회원교회는 아래 각 호의 자격을 항상 갖추어야 한다. 1. 남침례회가 2000년에 채택한 신앙고백서를 반영하는 신앙과 행습의 실천 2. 본회의 사역에 협력하거나 그 사역을 공식 지지 3. 본회의 협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본회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 ② 남침례회와 캐나다와 남미에 속한 한인교회 및 한인개척교회로서 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회는 본회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4 장 조직 및 임무 제10조 (임원 및 임원회) ① 본회는 총회장,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총무, 서기 및 회계 등의 임원들로 구성되는 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이 정한 임원들 가운데 총무는 유급 상근으로, 기타 임원들은 무급 비상근으로 운영한다. ③ 임원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총회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④ 본회 임원의 후보 자격, 선출 및 임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규약으로 정한다.	제3장 회원과 구성 제5조(회원) 총회의 서약과 목적에 동의하는 미국, 캐나다 및 중남미 지역 한인 침례교회를 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자격) 회원 자격은 총회 규약에서 정한다. 제7조 (지방회) 지방회는 총회를 구성하는 각 지역 교회의 연합체이다. 제8조 (임원 및 부서) 제1항 총회는 임원과 부서를 둔다. 제2항 임원은 총회장,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된다. 제3항 부서는 교육부, 국내선교부, 목회부, 영어목회부, 해외선교부와 신학교 분과, 여선교회 분과, 형제회 분과로 구성된다.
제3장 회의 헌법 제8조 (정기총회)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남침례회 정기총회와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제4장 회의 제9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총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임시총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북미 지역이나 혹은 총회 예정 지역에 자연재해, 재난, 전염병, 그 외 다른 사유로 인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총회장이 임원회 결의와 상임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추안을 거쳐 정기총회를 취소, 장소 변경, 혹은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정기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 규약으로 정한다. 헌법 제9조 (임시총회) ① 본회의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원교회 100 교회 이상의 청원, 혹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개최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안건은 미리 공지된 사항으로 제한한다. ② 임시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규약으로 정한다.	필요 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헌법 제14조 (상임위원회) ① 본회는 총회 임원, 각 부 및 각 분과위원회의 장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두되, 상임위원회의 장은 총회장이 된다. ② 상임위원회는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회 전반의 사역을 협력하여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15조 (실행위원회) ① 본회는 총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역 및 사업을 발굴, 계획, 검토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의 장은 본회 총무가 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은 추천 지방회의 지역 및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규약으로 정한다. 헌법 제16조 (부 및 분과위원회) ① 본회는 총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제5장 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총회는 임원과 부서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2조(실행위원회) 총회는 실행위원회를 둔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 총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4조(재산관리위원회) 총회는 재산관리를 위해 재산관리위원회를 둔다.

위하여 부 및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부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규약으로 정한다. ③ 총회장은 총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된 사업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헌법 제17조 (협력위원회) 본회는 임원회의 추천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 남 침례회의 기관목사 약간 명으로 구성되는 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헌법 제18조 (법정이사회) ① 본회는 총회 재산 관리를 위하여 임원회의 추천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 법정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법정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법정이사회는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매년 1/3씩 교체한다.	
헌법 제19조 (재정 감사) ① 본회는 2명의 재정 감사를 두어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게 한다. ② 재정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고 매년 1/2씩 교체한다. 헌법 제20조 (준거 법률) 본회는 비영리단체로 운영하되, 미연방정부 및 본회 사무실 소재지 관할 주 관련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제6장 감사 제15조(감사) 총회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감사를 둔다.
제6장 부칙 제1조 (헌법의 개정 요건 및 절차) ① 본회 헌법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또는 100개 이상 회원교회의 청원으로 정기총회 개최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② 정기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7장 부칙 제16조 (규약 개정 요건, 절차 및 효력) 제1항 (개정안 청원주체) 운영위원회, 100교회 이상의 연명, 정기총회에서 구성된 헌법 수정위원회에서 청원할 수 있다. 제2항 (개정안 접수 기한) 개정안은 정기총회 개최 90일 전까지 총무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제3항 (개정안 공고) 개정안은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공고되어야 하며, 이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2조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기) 본회 헌법 개정안은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지방회 구성의 최소 요건에 관한 경과 규정) 이 개정안 통과 당시 이미 구성된 지방회의 경우에는 제7조가 요구하는 최소 12개의 회원교회 구성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총회 등의 의사진행) 본회 총회 등에서의 의사 진행에 관해 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만국통상법에 따른다.	제4항 (개정안 통과 요건) 개정안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한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5항 (개정안 효력 발생 시점) 개정안은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점은 회의록에 명시되어야 한다.
헌법 (계속)	규약 수정안
헌법 제 5조 (한인교회등의 본회 가입 절차) ① 한인교회 또는 한인개척교회의 본회 가입은 원칙적으로 해당 교회 또는 개척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회에 가입함으로 한다. ② 해당 교회 또는 개척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회가 없는 경우 그 교회 또는 개척교회는 인접 지역 지방회에 가입함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해당 지방회에 가입할 수 없는 교회 또는 개척교회는 실행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1장 회원 제1조 (자격) 회원은 본 총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교회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항 남침례회(SBC)에 소속된 한인교회 제2항 캐나다침례회(CNBC)에 소속된 한인교회 제3항 중남미 지역의 한인침례교회 제2조 (총회 가입 절차 및 서류) 제1항 (가입절차) 원칙적으로 지방회를 통하여 가입한다. 제2항 (지방회를 통한 가입 절차) 제1호 해당 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회에 가입한다. 제2호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실행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접 지역의 지방회에 가입한다. 제3호 지방회는 회원 명부를 정기총회 60일 전까지 총회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실행위원회를 통한 가입 절차) 제1호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에 지방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회를 통한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실행위원회가 정하는 절차 및 심의를 따른다. 제2호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행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정기총회에 가입을 추천할 수 있다. 제3호 실행위원회는 추천 사유 및 절차를 명시하여 총회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회원 인준) 제1호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교회는 정기총회 30일 전까지 소정의 이수 교육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호 총무는 가입 신청 절차를 완료한 교회를 정기총회에 인준 상정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가입 서류) 제1호 주 정부 혹은 비영리단체(교회) 공인 등록 서류 사본 제2호 총회 가입 신청서
헌법 제 **6** 조 (회원교회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교회는 본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해당 교회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다. ② 회원교회가 파송하는 대의원은 침례교인 100명까지는 대의원 2명을 파송하고, 침례교인이 100명을 넘을 때는 매 50명마다 대의원 1명씩을 추가하되, 총5명을 초과할 수는 없다. ③ 회원교회가 파송한 대의원은 본회 총회 기간 중 발언권, 심의권 및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④ 남침례회의 교단 기관에서 종사하는 목사와 본회의 회원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는 본회의 명예 대의원이 되며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회원교회가 파송한 대의원은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는다. ⑤ 회원교회는 총회 협동선교비 납부 등 총회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규약 제 **5** 장 회원교회 및 대의원의 책임 제17조 (회원교회의 의무) 회원교회는 총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총회 협동선교비(일반경상예산의 1% 이상) 납부 2. 회원교회의 연례보고서 제출	제3조 (회원교회 및 대의원의 권리) 제1항 (대의원 파송권) 회원교회는 정기총회 및 규약이 정한 각종 회의에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다. 제2항 (대의원 수) 제1호 회계연도에 $1,200 미만의 협동 선교비를 납부한 회원교회는 총회에 대의원 2명을 파송할 수 있다. 제2호 협동 선교비 $600 마다 1명의 대의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3호 회원교회당 대의원의 수는 최대 5명이다. 제3항 (대의원의 권리) 대의원은 헌법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언권, 심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항 (대의원 권리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일부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제1호 회원교회 담임목사가 아닌 대의원 제2호 총회 협동 선교비 납부, 총회 협조 등 규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교회의 대의원 제4조(회원교회 및 대의원의 의무) 제1항 총회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교회 일반재정의 1% 또는 실행위원회 협동 선교비 권고안에 따른 협동 선교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총회의 각종 행사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항 대의원을 파송하여야 한다. 제5항 대의원은 품위유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헌법 제7조 (지방회의 설립) ① 본회 지방회는 각 주마다 한	제2장 지방회 제5조(총회와 지방회의 관계) 제1항 총회와 지방회는 본 총회의 목적을 위해 서로

개씩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지방회는 12개 이상의 회원교회를 가져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방회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② 한 주의 회원교회가 12개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주와 합하여 한 개의 지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기존 지방회의 합병, 분할 또는 새 지방회의 설립 등은 실행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한다. 채택일자: 1982년 6월 15일 (제 1 차 총회) 제 1 차 수 개정 일자: 1994년 6월 15일 (제 13 차 연차총회) 제 2 차 수 개정 일자: 2000년 6월 14일 (제 19 차 연차총회) 제 3 차 수 개정 일자: 2001년 7월 18일 (제 20 차 연차총회) 제 4 차 수 개정 일자: 2003년 6월 18일 (제 22 차 연차총회) 제 5 차 수 개정 일자: 2005년 6월 22일 (제 24 차 연차총회) 제 6 차 수 개정 일자: 2008년 6월 18일 (제 27 차 연차총회) 제 7 차 수 개정 일자: 2017년 6월 14일 (제 36 차 연차총회) 제 8 차 수 개정 일자: 2022년 6월 15일 (제 41 차 연차총회)	협력하는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제2항 지방회는 총회의 목적에 부합한 규약 또는 내규를 갖추어야 한다. 제3항 지방회의 설립, 분리 및 통폐합은 총회 정기총회에서 인준받아야 한다. 제6조(지방회의 설립) 제1항 미국 내의 경우, 각 주에 1개의 지방회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1개 주의 지방회 설립 최소 회원교회 수는 12개이다. 제3항 1개 주의 회원교회가 12개 미만일 경우 인근의 주와 연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제7조(지방회의 분할) 제1항 회원교회의 증가로 지방회 분할이 필요하면, 지역적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지방회 분할 시, 인접한 주와 연합하여 지방회를 설립할 수 없다. 제3항 지방회의 분할은 지방회 사무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제4항 분할된 지방회의 회원 교회는 각각 최소 12개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지방회의 통폐합) 제1항 통폐합을 원하는 지방회는 각 지방회 사무총회에서 통폐합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회의 분할로 신설된 지방회는 원래 소속되었던 지방회로만 통폐합할 수 있다.
<u>규약</u> 제1장 회의 및 위원회 제1조 (정기총회) 본회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각종 사업 및 사역의 진행 2. 예산안 및 결산안 3. 임원 선출 및 임면 4. 헌법, 규약 및 세칙의 개정 5. 포상 및 징계 6. 총회, 지방회, 회원교회, 대의원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주요	제3장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제9조 (정기총회) 제1항 남침례회의 정기총회 시기 및 장소와 동일하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로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우면, 총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시기, 장소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변경, 연기, 또는 취소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항 정기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1호 각종 사업의 계획 및 진행 제2호 예산 및 결산안 심의 및 승인 제3호 임원 선출 및 임명

안건 제2조 (임원회) 임원회는 매년 두 번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총회장이 임시로 소집하며,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1. 전년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 집행 2. 전년 총회에서 부여한 안건 작성 및 심의 3. 정기 및 임시 총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심의 및 조정 제3조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매년 두 번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4호 헌법, 규약 및 각종 세칙 개정 제5호 포상 및 징계 의결 제6호 총회, 지방회, 회원교회, 대의원 관련 사항 제7호 기타 안건 제4항 정기총회의 정족수는 등록을 마친 대의원 중 실제 참석자 수로 한다. 제5항 정기총회의 가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6항 (정기총회 취소) 제1호 정기총회 개최 불능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취소로 본다. 제2호 취소될 경우 총회의 모든 피선, 임명된 자들의 임기는 1년 자동 연장된다. 제10조 (임시총회) 제1항 (소집 요건) 임시총회는 다음의 청원요건에 따라 소집된다. 제1호 100개 이상의 회원교회가 청원한 경우 제2호 5개 이상의 지방회가 청원한 경우 제3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회장이 청원한 경우 제2항 (청원서) 청원서 작성 및 제출 제1호 청원서에는 청원 안건과 운영 방식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2호 청원서는 개최 희망일 30일 전에 총무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3항 (소집절차) 청원이 접수되면 임원회는 임시총회의 시기, 방식, 장소를 결정하며, 총회장은 개최일 15일 전까지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 (개회 정족수) 임시총회 개회 정족수는 개최 전월 기준 협동 선교비 납부 회원교회 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대의원 출석으로 한다. 제1호 대의원 등록 및 인원 산정 기준은 정기총회의 방식을 따른다. 제5항 (심의안건) 임시총회는 청원된 안건만 심의하며, 그 결과는 정기총회의 가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6항 (소집 제한)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90일 이내에는 소집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 **(**총회장**)** ①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② 총회장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③ 총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부총회장)	제4장 임원의 구성 및 임무 제11조(임원의 임기) 제1항 총회장,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있다. 제**2**항 총무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및 재임할 수 있다**.** 제3항 서기와 회계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및 재임할 수 있다.

① 본회는 총회장의 직무 수행을 보좌하며, 총회장의 유고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의 때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 명의 부총회장을 둔다. ② 제1 및 제2 부총회장은 평소 총회장의 직무 수행을 보좌하며, 총회장의 유고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의 때에는 제1부총회장이, 총회장 및 제1부총회장의 유고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의 때에는 제2부총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제1 및 제2 부총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3조 (총무) ① 총무는 총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고, 정기 및 임시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행하며, 예산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고, 그 진행 상황을 상임위원회와 정기 및 임시 총회에 보고한다. 총무는 또한 모든 문서를 규정에 따라 보관하며, 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② 총무의 임기는 4년이며,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이 정하는 총무의 연임을 위한 투표는 현직 총무의 직무 수행 3년이 종료되는 해의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제12조(겸직 금지) 임원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실행위원, 감사,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임무) 제1항 (총회장) 제1호 총회를 대표한다. 제2호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제3호 총무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4호 실행위원회의 정원 외 위원이 된다. 제5호 각 부서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2항 (제1부총회장) 제1호 총회장을 보좌한다. 제2호 총회장의 유고 또는 직무 수행 불능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3호 실행위원회의 정원 외 위원이 된다. 제3항 (제2부총회장) 제1호 제1부총회장과 함께 총회장을 보좌한다. 제2호 제1부총회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3호 정기총회 준비위원장이 된다. 제4항 (총무) 제1호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의 행정 및 실무를 수행한다. 제2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한다. 제3호 총회의 기본 재산과 문서를 관리하며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제4호 사무직원을 관리 및 감독한다. 제5호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6호 감사 준비를 총괄한다. 제7호 각 부서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5항 (서기) 제1호 총회 및 각종 회의의 기록을 정리 및 보관한다. 제2호 회의록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6항 (회계) 제1호 재정 출납 업무를 담당한다. 제2호 재정 장부를 기록, 보관 및 관리한다. 제3호 감사 준비위원이 된다. 제4호 총무와 공동으로 수표를 발행한다. 제14조 (임원회) 제1항 총회장은 매년 2회 정기 임원회를 소집한다. 제2항 총회장은 필요 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항 임시 임원회의 의결은 정기 임원회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항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1호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집행 제2호 정기 및 임시총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심의 및 조정 제**5**항 개 교회와 지방회의 상정의견은 정기총회 **4**개월 전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임원회에 청원한다**.**
규약 제 2 장 임원 및 상임위원 제7조 (총회장의 선거) ① 총회장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천으로 입후보된 자들 가운데 출석 대의원 과반의 득표자로 한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차 투표의 다 득표자 두 명을 놓고 2차로 투표하여 그 중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③ 총회장 후보는 선출일 기준으로 본회 회원교회에서 10년 이상을 전임 목회한 자로서 목회 경력상 중대한 흠이 없으며 본회 회원교회 및 대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이어야 한다. 제8조 (부총회장의 선거) ① 제1부총회장 및 제2부총회장의 후보자 자격은 총회장의 경우와 같다. ② 정기총회에서는 총회장,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의 순서로 선출한다. 제9조 (총무의 선출) ① 현직 총무의 불신임 결의 또는 궐위로 인해 새로 선출하여야 하는 총무는 실행위원회 인사소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들 가운데 총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차 투표의 다 득표자 두 명을 놓고 2차로 투표하여 그 중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제10조 (서기)	제5장 임원 선출 및 충원 제15조 (총회장 자격) 제1항 정기총회 기준일로부터 회원교회에서 10년 이상 담임 목회한 자여야 한다. 제2항 회원교회가 협동 선교비와 기부금 납부 등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제3항 목사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고, 대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장 선출)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 30일 전에 공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선출한다. 제2항 (선출 방식) 제1호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2호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3호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제4호 후보가 2명일 경우,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재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제5호 단독 후보일 경우, 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7조 (제1부총회장의 자격과 선출) 총회장의 자격 및 선출 절차를 따른다. 제18조 (제2부총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1항 차기 총회 개최지의 지방회에서 1인을 추천한다. 제2항 해당 지방회에서 추천하지 않거나 양보하는 경우, 해당 지방회가 지정하는 다른 지방회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항 추천은 정기총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총회장의 자격 요건을 준수하되, 회원교회 담임 목회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5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천 후 대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박수로 추대한다. 제19조 (임원 선출 순서)

① 서기는 본회의 모든 회의의 개최,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본회 총회에 보고한다.

② 서기는 임원회의 추천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 서기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

① 회계는 본회의 총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본회의 모든 재정 출납의 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② 회계는 임원회의 추천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 회계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본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모든 재정은 총무와 회계가 공동 서명한 수표, 또는 체크 카드 등 사후 추적이 가능한 결재 수단으로 지출한다.

제12조 (임원 및 상임위원의 선거 및 보선)

① 총회장, 부총회장 및 총무를 제외하고, 선출된 임원 또는 상임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다음 번 총회 때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이 때,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총회장, 부총회장이 결원된 때에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총무가 결원된 때에는 회계가 즉시 그 업무를 대행하되, 다음 번 정기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정기총회 때 투표로 인해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투표로 선출된 직후부터 시작되고, 후임자의 선출 시점 직전에 종료된다.

총회장,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의 순서로 선출한다.

제20조 (총무)
제1항 (후보 자격)
제1호 후보는 회원교회에서 담임목회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2호 후보는 정기총회 개최 90일 전까지 실행위원회에 자격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 (후보 추천 및 등록)
제1호 실행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기총회 6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2호 후보 등록 절차 및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다.
제3항(총무 선출)
제1호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2호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제3호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제4항(연임 및 재임)
제1호 총무가 1차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 임기 3년차에 해당하는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제2호 1차 연임 후 추가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 4년마다 총무 선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3호 1차 연임이 부결될 경우, 총무의 임기는 1년 후 정기총회 직후 종료된다.
제4호 1차 연임을 희망하는 총무는 실행위원회에 연임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5호 실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정기총회 120일 전까지 총무의 연임 의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통보해야 한다.
제6호 (재임) 연임이 중단되었던 전임 총무가 재임된 경우, 신임 총무의 규례를 따른다.
제7호 총무는 67세가 되는 해의 정기총회에서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퇴임한다. 후임 총무는 당해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1조 (서기와 회계)
제1항 신임 총회장은 신임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총무와 협의하여 서기 및 회계 후보를 추천하되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한다.
제2항 서기 또는 회계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회장은 후보자를 지명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할 수 있다.

제22조 (결원의 충원)
제1항 총회장이 궐위될 경우, 제1부총회장이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2항 제1부총회장이 궐위될 경우, 제2부총회장이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3항 제2부총회장이 궐위될 경우, 해당 지방회가 정한 후보를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후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4항 총무가 궐위될 경우, 회계가 차기 정기총회까지 총무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회계가 총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가 총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제1호 대행자의 공식 명칭은 '총무 대행'으로 한다. 제2호 총무 대행자에게는 총무 급여의 50%를 지급한다. 제3호 총무의 궐위로 인한 신규 선출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계승하지 않으며, 신임 총무 선출 절차에 따른다. 제23조 (임기 시작 및 종료) 신·구 임원 교체식 종료 시 기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며, 동 시점부터 신임 임기의 시작으로 본다.
규약 제5조 (부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각 부의 장과 각 분과위원회의 장은 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하되,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부는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내규를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각 부의 이사는 12명까지로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총회의 인준을 받아 1/3씩 교체한다. ④ 총회장과 총무는 각 부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첫해 이사는 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6조 (부와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 본회 각 부와 각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선교부 남침례회 총회 해외선교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유대하여 본회 회원교회들이 해외선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6장 (부와 분과의 구성 및 임무) 제24조 (구성) 제1항 (부서 운영 원칙) 제1호 각 부서는 총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2호 각 부서는 자체적인 내규를 마련할 수 있다. 제3호 내규의 제정 및 개정 시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호 각 부의 이사, 이사장, 부서장, 총무는 해당 부서에서 추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이사 및 이사장) 제1호 각 부 이사의 정원은 15명으로 한다. 제2호 이사는 매년 1/3씩 교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호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4호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이사의 임기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3항 (부서장 및 분과장) 제1호 부서장은 해당 부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호 부서장의 임기는 3년이며, 이사 임기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3호 분과장은 총회장이 지명한다. 제25조 (임무) 제1항 (교육부) 남침례회(SBC) 주일학교, 신앙훈련부, 교회음악부와 협력하여 회원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제2항 (국내선교부) 남침례회 북미선교부(NAMB)와

2. 국내선교부 남침례회 총회 국내선교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유대하여 본회 회원교회들의 부흥과 교회 개척을 지원한다. 3. 교육부 남침례회 산하에 있는 주일학교, 신앙훈련부, 교회음악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유대하여 본회 회원교회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한다. 4. 목회부 본회 회원교회들의 목회정보 교환, 목회자들의 노후대책, 보험, 목회상담, 영성개발 및 목회 발전을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5. 영어목회부 본회 지역 회원교회의 영어 목회 업무를 지원한다. 6.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매년 정기총회의 준비, 진행, 종결 등 정기총회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되, 제2부총회장이 준비위원회의 장을 맡는다. 7. 여선교회 분과위원회 남침례회 총회 여선교회 연합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유대하여 본회 회원교회들의 여선교회 발전을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8. 형제회 분과위원회 남침례회 총회 형제회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유대하여 본회 회원교회들의 형제회 발전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9. 신학교 분과위원회 미국 내 한인 남침례회 목회자 발굴 및 양성, 한인 침례교 신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를 연구하고 수행한다. 10. 총회장이 긴급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종료 시한을 정해 구성하는 위원회	협력하여 회원교회의 부흥과 교회 개척을 지원한다. 제3항 (목회부) 회원교회의 목회 정보 교환, 목회자의 노후대책, 보험, 상담, 영성 개발 및 목회 업무를 지원한다. 제4항 (영어목회부) 차세대 지도자들을 발굴하여 양성하고 영어 목회 업무를 개발하며 지원한다. 제5항 (해외 선교부) 남침례회 국제선교부(IMB)와 협력하여 회원교회의 해외 선교 활동을 지원하며, 선교사를 파송한다. 제6항 (신학교 분과) 남침례회 6대 신학교와 협력하여 한인 목회자를 발굴·양성하고, 신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수·신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7항 (여선교회 분과) 남침례회 여선교회 연합회와 협력하여 회원교회의 여선교회 발전을 지원한다. 제8항 (형제회 분과) 남침례회 형제회 위원회와 협력하여 회원교회의 형제회 발전을 지원한다. 제26조 (경비, 보조금 및 보고서 제출) 제1항 각 부와 분과의 운영 경비는 이사회비, 후원금 및 지원금으로 한다. 제2항 총회는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각 부와 분과는 정기총회에 활동 보고서 및 재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27조 (임무) 제1항 각 부 및 분과를 관리·감독한다. 제2항 총회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역을 집행한다. 제3항 총회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제28조 (회의)

	제1항 총회장은 매년 2회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제2항 총회장은 필요 시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규약 제4조 (실행위원회) ① 실행위원회는 총회의 사역을 연구하고, 인사, 기획 및 재정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본회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실행위원회는 각 지방회가 추천한 1명씩을 합한 15명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하되, 매년 실행위원을 추천할 지방회의 순서는 실행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③ 실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1/3씩을 교체하되, 새 실행위원은 지방회의 추천, 실행위원회 인사소위원회의 심의 및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④ 본회 총회장과 총무는 실행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실행위원회에 인사, 기획, 재정 소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은 순차적으로 각 소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8장 실행위원회 제29조 (구성 및 임기) 제1항 실행위원회는 자체 내규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천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호 인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공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호 총회장 및 제1부총회장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항 임기는 3년이며, 매년 1/3을 교체한다. 제1호 실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혹은 재임할 수 있다. 제2호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계승할 경우에는 1호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3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항 (위원장) 제1호 위원장은 총회 총무로 한다. 제2호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항 (부위원장) 제1호 부위원장은 2~3년 차 실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호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실행위원 임기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3호 부위원장은 실행위원장을 보좌하며, 필요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4호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31조 (임무) 제1항 실행위원회는 총회의 기획, 인사,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정기총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 제2항 실행위원회는 총회의 주요 사역을 연구·계획·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호 총회나 임원회가 요청한 업무를 수행하고 협력한다. 제2호 총회의 전반적인 사역에 대해 총회장에게 자문한다. 제32조 (소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1항 실행위원회에는 기획 소위원회, 인선 소위원회, 재정 소위원회를 두며,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호 위원장은 2~3년 차 실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호 소위원회 위원은 실행위원 전체의 동의 없이 소속을 변경할 수 없다. 제2항 기획 소위원회는 총회의 중·장기 전략과 목표를 수립·평가한다. 제3항 인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호 총무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2호 선거관리위원, 재산관리위원, 감사를 추천한다. 제3호 기타 인사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장에게 자문한다. 제4항 재정 소위원회는 총회의 재정 편성을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호 총회의 결산을 분석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제2호 총회의 재정 수입원을 창출한다. 제33조 (회의) 제1항 실행위원장은 매년 2회 정기 실행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항 실행위원장은 필요 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규약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① 본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실행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헌법 및 규약에서 정한 선출직의 선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선거관리세칙을 마련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일 2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세칙을 확정 공표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고, 매년 절반씩 교체한다.	제9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 (구성)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하며, 실행위원회에서 매년 3인을 추천한다. 제2항 정기총회 참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인준한다. 제3항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불가하나 재임할 수 있다. 제4항 선거관리위원장은 실행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제35조 (임무)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세칙에 따라 총회의 각종 선거를 관리·집행·감독한다. 제1호 선거관리 명부를 작성, 확인한다. 제2호 선거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관리한다. 제3호 사전선거 운동 및 부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방지한다. 제2항 규약이 정한 선출직 임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공천한다. 제36조 (의무)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2항 선거 또는 선출의 결과를 총회장에게 통보한 후 발표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재산관리위원회 제37조 (임무) 제1항 총회의 부동산 및 각종 재산을 관리한다. 제2항 저축 및 투자와 같은 중·장기 비(非)운영 자금을 총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3항 정부 및 금융기관과 관련된 공문서를 관리한다. 제4항 회원교회 사무처리회에서 위탁한 재산(동산 및 부동산)을 관리한다. 제5항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원회에

	통보하고 관리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 (구성 및 임기) 제1항 (구성) 제1호 재산관리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제2호 재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실행위원회가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받아야 한다. 제3호 총회장과 총무는 정원 외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2항 (임기) 제1호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으나 재임은 가능하다. 제2호 위원의 1/3을 매년 교체한다. 제39조 (의무) 제1항 관리 재산의 보존과 변동, 개교회의 위탁 재산 현황 및 부채 변동 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2항 모든 업무처리의 과정과 결과를 정기총회에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투자 변경 및 기타 재정 관련 사안을 심의한 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규약 제 4장 재정 제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 교회의 총회 협동선교비, 총회 때의 헌금 및 각종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제1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5월 1일에 시작되며, 다음 해 4월 30일에 종료된다. 제16조 (재정 감사 기간) 재정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모든 감사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단 피 감사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자의 인수인계 전까지 미 감사 기간 동안의 재무처리를 감사하여 그 결과가 인수인계에 포함하게 한다.	제11장 재정 제40조 (재원) 총회의 재정은 회원교회의 협동 선교비, 헌금, 후원금, 기부금 및 기탁금으로 운영된다. 제41조 (재정의 분류) 제1항 재정은 일반재정과 특별재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2항 일반재정은 협동 선교비 및 사용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헌금 등이다. 제3항 특별재정은 사용 목적이 지정된 각종 헌금 및 기탁금 등이며, 다음을 포함한다. 제1호 선교비 제2호 각 부의 자체 예산 제3호 구제비 제4호 건물 및 건축비 제5호 직원 퇴직 및 복지 적립금 제6호 기타 필요에 따라 지정된 항목 제42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다. 제43조 (계좌 및 결제의 수단) 계좌의 개설, 변경과 법인카드의 증감에 대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장 감사 제44조 (구성) 제1항 총회는 2인의 감사를 둔다. 제2항 감사는 실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된다. 제1호 최근 5년간 성실하게 총회에 참석하고 협동 선교비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제2호 자격 요건은 실행위원회의 세칙에 따른다. 제3호 해당 분야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제3항 실행위원회는 매년 1인의 감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호 감사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제2호 1년 차 감사는 부감사, 2년 차 감사는 정감사가 된다. 제45조 (감사의 권한과 임무) 제1항 (권한) 감사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권한을 가진다. 제2항 (임무) 재정 및 관련 행정 전반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6조 (감사 기간) 제1항 정기 감사는 정기총회 45일 전에 진행한다. 제2항 감사 결과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감사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정기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감사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규약 제18조 (포상) 본회는 본회 발전에 큰 공을 세웠거나 탁월한 모범이 된 자 또는 회원교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제명) ① 본회 대의원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대한 본분을 어기거나 본회의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징계안 상정과 총회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대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교회가 명백한 이단 사설을 용납하거나 본회의 신앙과 행습을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징계안 상정과 총회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회원교회를 제명할 수 있다.	제13장 회원교회 및 대의원의 포상과 징계, 자격상실 제47조 (포상) 다음과 같은 자를 포상한다. 제1항 (근속 포상) 제1호 (20년 근속 포상) 한 회원교회에서 20년간 담임 목회자로 시무한 자 제2호 (30년 근속 포상) 20년 근속 포상 후 같은 교회에서 추가로 10년간 시무한 자 제2항 (은퇴 포상) 제1호 회원교회에서 20년 이상 담임 목사로 시무한 후 은퇴한 자 제2호 총회 또는 남침례회 파송 한인 선교사로 20년 이상 사역한 후 은퇴한 자 제3항 (공로 포상) 제1호 총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탁월한 모범을 보인 개인, 교회, 또는 단체 제2호 특별한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공로 포상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8조 (징계) 다음과 같은 자를 징계할 수 있다. 제1항 (징계 사유) 제1호 회원교회가 명백한 이단적 교리를 용납하거나 유포하며, 총회의 신앙과 행습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 제2호 대의원이 그리스도인 및 목회자로서의 본분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총회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제2항 (징계의 종류 및 기간) 제1호 (경고) 총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교회 또는 대의원에게 경고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호 (자격의 정지) 경고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총회장은 실행위원회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교회 및 대의원의 자격을 차기 정기총회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다. 제3호 (제명) 자격 정지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교회 또는 대의원을 제명한다. 제49조 (자격상실) 제1항 (회원교회의 자격상실) 회원교회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방회의 확인 후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호 남침례회(SBC)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제2호 남침례회 신앙고백과 대립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 소속 한인 지방회에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3호 교회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폐쇄된 경우. 제2항 (대의원의 자격 상실) 대의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호 소속 회원교회가 제명되었을 경우 제2호 소속 회원교회에서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한 경우 제3항 (회원교회와 대의원의 자격상실 절차) 회원교회와 대의원의 자격상실은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제50조 (회원 및 대의원 자격 회복) 상실된 회원 또는 대의원 자격 회복은 원인이 해소된 경우 해당자의 청원에 따라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한다.
제 6 장 부칙 제1조 (규약의 개정 요건 및 절차) ① 본회 규약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또는 100개 이상 회원교회의 청원으로 정기총회 개최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② 제안된 개정안은 정기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2조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기) 본회 규약 개정안은 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효력이	제14장 부칙 제51조 (규약 개정 요건, 절차 및 효력) 제1항 (개정안 청원주체) 운영위원회, 100교회 이상의 연명, 정기총회에서 구성된 규약 수정위원회에서 청원할 수 있다. 제2항 (개정안 접수기한) 개정안은 정기총회 개최 90일 전까지 총무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제3항 (개정안 공고) 개정안은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공고되어야 하며, 이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4항 (개정안 통과 요건) 개정안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한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5항(개정안 효력 발생 시점) 개정안은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점은 회의록에 명시되어야 한다.

발생한다. 제3조 (총회등의 의사진행) 본회 총회등에서의 의사 진행에 관해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만국통상법에 따른다. 제20조 (본회 사무실 소재지) 본회의 본부 사무실은 1104 Breezewood Drive, Lewisville, TX 75077, USA에 둔다.	제52조 (의사진행) 제1항 (의사진행절차) 의사진행은 헌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된다. 제2항 (의사진행결정) 총회와 본회에 속한 모든 기관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의사진행 결정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제3항 (표준 의사진행 규정) 의사 진행에 관한 표준 규정은 Robert's Rules of Order 최신판을 따른다. 제53조 (총회 사무실 소재지) 제1항 (사무실 소재지) 제1호 총회의 사무실 소재지는 미국 Texas 주 DFW 인근 지역에 둔다. 제2호 사무실의 소재지는 본 회의 운영 및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항 (소재지 변경 절차) 제1호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실행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호 변경된 소재지는 회의록에 기록되고, 모든 관련 기관에 공지되어야 한다. 제54조 (세칙) 제1항(세칙 제정 및 운영) 제1호 본 규약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호 세칙은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세칙 승인 절차) 제1호 제정 혹은 개정을 요하는 세칙은 정기총회 90일 전까지 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2호 임원회 심의 후, 정기총회 개최 60일 전까지 총회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 승인된 세칙은 정기총회 종료 후 즉시 적용된다. 제55조 (현 총무의 임기 특례) 제1항 본 규약 시행 이전에 선출된 총무의 임기는 선출 당시 규약에 따른다. 다만, 본 규약의 정년 규정(67세 되는 해의 정기총회)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항 본 부칙은 규약 시행 이전에 선출된 총무의 임기 종료 시 소멸한다.
	1. 지방회에 관한 세칙 제1조 (지방회 설립) 제1항 (설립신청서 접수) 제1호 지방회 설립을 위한 신청서는 정기총회 개최 120일 전까지 총무에게 문서로 접수되어야 한다. 제2항 (첨부서류) 제1호 각 교회와 대표자 명단 및 서명

	제2호 설립 이유서 제3호 주의 인접 또는 인근 2개 지방회장의 추천서 제4호 지방회 규약(내규) 제3항 (신청서 처리 절차) 제1호 총무는 설립신청서를 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제2호 실행위원회는 신청서의 타당성을 심의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제4항 (지방회 인준) 지방회 설립은 정기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된다. 제2조 (지방회 분할) 제1항 (지방회 분할 인준) 지방회의 분할은 정기총회 출석 대의원 2/3 찬성으로 인준된다. 제3조 (지방회의 통폐합) 제1항 (통폐합 사유) 지방회 회원교회의 수가 감소하여 다른 지방회와 통폐합이 필요할 경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인근 주의 지방회와 통폐합할 수 있다. 제2항 (통폐합 절차) 통폐합은 인접한 지방회 간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제3항(통폐합 찬성 요건) 제1호 통폐합을 위한 의결은 양쪽 지방회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2호 만약 한쪽 지방회에서 통폐합이 부결된 경우, 통폐합을 원하는 지방회는 인근 다른 지방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3호 통폐합을 원하는 지방회는 동시에 복수의 지방회에 요청할 수 없다. 제4항 통폐합을 원하는 지방회에 속한 교회는 개별적으로 타 지방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5항 (통폐합 결과 보고) 제1호 통폐합된 지방회는 즉시 실행위원회에 통폐합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호 실행위원회는 통폐합 결과를 의견서와 함께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총회장, 제1부총회장 결원 또는 부재 시 선거사무 세칙 제1조 (선거일 부재 시 처리) 제1항 (부재 사유 및 절차) 제1호 선거일에 천재지변, 교통상의 불가피한 사유, 건강 문제 등으로 공천된 후보자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가능한 통신수단을 통해 후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제2호 후보자는 자신의 의사를 신속히 통신수단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제3호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의 의사를 녹취하거나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총회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통신 끊김 시 처리) 제1호 정견 발표 전까지 통신이 끊긴 경우, 해당 후보자는 사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조 (선거관리 등록일까지 결원된 경우) 제1항 (후보자 결원 처리) 제1호 총회장 또는 제1부총회장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까지 결원된 경우, 실행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시 14일 전까지 후보자를(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2항 (후보자 공고) 제1호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해 심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선거 개시 전 후보자 결원 처리) 제1항 (선거 개시 전 결원 처리) 제1호 선거 개시 전에 후보자가 결원된 경우, 총회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제2항 (청원에 의한 후보자 지정) 제1호 대의원 20명 이상의 청원에 의해 후보자를(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호 청원이 접수되면, 총무는 해당 후보자의 기본 인적 사항과 활동 사항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3호 후보자가 규약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는 선거에서 배제된다. 제4호 선거관리위원장은 최종 후보자 명단을 총회장에게 제출한다. 제3항 (속회 및 선거 진행) 제1호 총회장은 속회를 선언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사무를 진행한다. 제4조 (선거 도구의 보관) 제1항 (선거 도구 보관 의무) 제1호 선거결과 발표 후,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 및 선거 도구를 총무에게 양도하여 1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호 당락에 사용된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 밀봉하여야 한다. 제2항 (낙선자 의사 확인) 제1호 낙선자가 밀봉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 해당 투표용지는 밀봉하지 않는다.

	3. 재산관리위원회 세칙 제1조 (위원의 자격) 제1항 본회에 속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최근 5년간 정기총회에 참석한 자이어야 한다. 제2항 협동 선교비를 최근 5년 연속으로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제3항 재산상의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신용평가가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제2조 (회원교회 재산 관리) 제1항 회원교회 사무처리회의 청원에 따라 재산을 관리한다. 제1호 업무처리의 과정과 결과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호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원회에 통보하고 관리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책임) 제1항 위원회는 총회 및 각종 위탁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 제2항 위원은 개인의 문제로 인해 본회의 재산 관리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본회의 동산 및 부동산을 횡령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업무에서 배제되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된다. 제4항 위원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참 시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제1항 임원은 위원장, 서기, 회계이다. 제1호 위원장과 회계는 정기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2호 위원장과 회계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의 임기 잔여기간 동안만 유효하다. 제3호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차기 정기총회까지 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호 위원장은 임기 중 총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총회장으로 출마할 경우 즉시 위원장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5호 서기는 총회의 총무가 겸한다. 제5조 (임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한다. 제2항 서기는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3항 회계는 위원장을 도와 총회 비운영 자금(동산

	및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재산 및 위탁 재산을 점검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 (회의) 제1항 (정기위원회) 제1호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는 4명 이상으로 한다. 제2호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호 위원회 참석에 따른 비용 지급 기준 및 세부 내역은 실행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항 (임시위원회) 제1호 필요 시 위원장 또는 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소집되며, 안건과 방법을 지정하여 소집한다. 제2호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호 의결은 정기위원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호 위원장에 관한 안건일 경우, 총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제3항 (소집 통보 기한) 정기위원회는 회의 60일 이전에 소집 통보하며, 임시위원회는 회의 예정일 최소 7일 이전에 소집 통보한다.
	4. 동수 의결방법 제1조 최종 투표에서 동수일 경우 다음에 따른다. 제1항 (동수부결 원칙) 의장이 투표를 하였을 경우 부결 처리한다. 제2항 의장이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2조 선출에 관한 투표에서 최종 결정이 불가할 경우, 재석 대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5. 용어 정의 제1조 (연임) 연임(**連任**)이란 한 직책(위)에서 정해진 임기를 마친 후, 그 직책(위)에 연속해서 다시 선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 (재임) 재임(**再任**)이란 정해진 임기 혹은 연임 후 연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동일 직책(위)에 선임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택일자: 1982년 6월 15일 (제1차 총회) 제 1차 수 개정 일자: 1994년 6월 15일 (제13차 연차총회) 제 2차 수 개정 일자: 2000년 6월 14일 (제19차 연차총회) 제 3차 수 개정 일자: 2001년 7월 18일 (제20차 연차총회) 제 4차 수 개정 일자: 2003년 6월 18일 (제22차 연차총회) 제 5차 수 개정 일자: 2005년 6월 22일 (제24차 연차총회)	제44차 총회 임원 총 회 장 이태경 목사 제1부총회장 김은복 목사 제2부총회장 김섭리 목사 총 무 강승수 목사 서 기 오천국 목사 회 계 유영근 목사

제 6차 수 개정 일자: 2008년 6월 18일 (제27차 연차총회) 제 7차 수 개정 일자: 2017년 6월 14일 (제36차 연차총회)	
	제43차 총회 규약수정위원 위 원 장 이태경 목사 수정위원 강승수 목사 고명천 목사 김태욱 목사 김형민 목사 이헌 목사 최영이 목사 김영하 목사 검토위원 전단열 목사